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안교육기관 금연구역 지정 등 》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04호)
- 서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03호)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25호)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64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6
1. 대안교육기관 금연구역 지정 (정진욱의원안)	6
2. 음주폐해 예방사업 증진 (서명욱의원안)	13
3. 가향담배 판매 또는 수입 판매 금지 등 (전진숙의원안)	18
4.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 관련 내용 추가 (한지아의의원안)	26

I. 개요

1.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490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진욱의원 등 23인

(2) 제 안 일 : 2024. 10. 25.

(3) 회 부 일 : 2024. 10.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

하지만,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미포함됨.

이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2.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550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명옥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1. 12.

(3) 회 부 일 : 2024. 11.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8조의 3, 제25조).

3.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582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22.

(3) 회 부 일 : 2024. 11.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 특유의 향과 맛을 감추기 위해 다양한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제품이 증가하고 있음. 가향물질은 담배의 맛, 향 등을 좋게 하여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 우려가 있음.

또한 가향담배는 담배에 대한 중독을 야기하고 금연을 어렵게 하며 설탕이나 바닐린과 같은 가향물질은 연소되면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어내는 등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하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외에서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가향물질 함유 담배의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담배의 제조자등이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시 제한만 하고 있으며 가향물질 첨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음.

이에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담배 중독과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조장 요인을 방지하고 건강에 해로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31조의2 및 제34조).

4.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616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3.

(3) 회 부 일 : 2024. 12.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161명, 부상자수는 122,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II. 검토의견

1. 대안교육기관 금연구역 지정 (정진욱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의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학생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u>6의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u>

7. ~ 26. (생략)	7. ~ 26.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서는 비흡연자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국회 청사, 정부 및 지자체 청사 외에 교육 시설로서 어린이집(제9호) 및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¹⁾²⁾(제6호) 등도 포함되어 있음.
- 그 외,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해당 구역에서의 금연구역지정, 표지설치 및 흡연실 설치를 하지 않은 관리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1)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 6. (생략)

2)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금연구역 >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舎)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안 교육기관³⁾도 금연구역에 포함하여 학생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임.

< 청소년 흡연율 >

산출지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현재* 흡연율	전체	9.2	7.8	6.3	6.4	6.7	6.7	4.4	4.5	4.5	4.2
	중학교	4.7	3.3	2.5	3.0	3.0	3.2	1.7	1.9	2.1	2.2
	고등학교	13.5	11.7	9.5	9.2	9.8	9.9	7.1	7.2	7.1	6.4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사용한 사람의 비율

□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은 학력 인정 여부에서만 차이⁴⁾가 있을 뿐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흡연과 관련한 학생의 교육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됨.

< 시도교육청별 대안교육기관 등록현황(24.10.16기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4	9	7	7	12	11	2	1	6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6	9	7	11	11	7	8	259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는 학력인정 규정이 없음.

□ 참고로, 청소년에게 미치는 담배의 유해성⁵⁾⁶⁾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청소년의 흡연률(참고자료 1)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학생의 직·간접적 흡연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을 확대해 오고 있음.

<학생 관련 금연구역 지정제도 연혁>

연 도	내 용
1995년	-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 대상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의료기관, 학원,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등 10종의 공중이용시설
1999년	- 금연구역 지정 대상 공중이용시설 변경·확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등 추가
2002년	- 대상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구분 · 전체 금연구역 지정 대상: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등
2003년	-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 확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2011년	-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
2017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 지정
2023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장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포함

5) 2022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니코틴은 성장하는 청소년의 뇌를 해칠 수 있으며, 주의력, 학습, 감정 및 충동 조절하는 뇌의 부분들을 해칠 수 있음.

6)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도 국내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과 범불안장애 사이의 연관성을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됨.

- 최근 1주일간 가정에서 4일 이상 간접흡연을 경험한 학생이 간접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범불안장애 위험이 가정, 공공장소, 그리고 학교에서 각각 1.17배, 1.49배, 1.40배 높음.

- 기존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접흡연은 청소년의 호흡기계 증상 및 대사증후군의 유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수면을 방해하거나 학업성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신효민, 이상준 외. (2022). ‘한국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과 범불안장애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이용하여’.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2022;47(3):222-231.)

□ 다만, 개정안에서는 추가되는 금연구역을 “대안교육기관의 교사⁷⁾ (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⁸⁾”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학교의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현행(제9조제4항제6호)⁹⁾과 같이 “대안교육기관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2024. 8. 17. 시행)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설정¹⁰⁾하고 있는 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은 보호하려는 대상으로서 동일하다는 점에서, 추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임.

<학교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7) ‘교사’는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을 의미함.

8)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를 의미함.

9)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10)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에 개최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 30미터 확대’(2023. 8. 16 개정 「국민건강증진법」)를 담배규제 정책 주요 성과로 소개한 바 있음.

-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 등의 간접흡연 예방 및 건강 보호 측면에서 대안교육기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2. 음주폐해 예방사업 증진 (서명옥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음주폐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절주문화를 조성하고 음주폐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25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u>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u>)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 및 치료</u> 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의3(<u>절주문화 조성·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u>) ① ----- <u>조성·음주폐해 예방</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 (생략)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u>지원</u>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1. ----- ----- <u>지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u> -----
2. ~ 12. (생략)	2.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음주는 블랙아웃, 알코올성 치매와 같은 뇌손상, 지방간 등 간 관련 질환, 수면장애 등을 유발하고, 식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등 암 발병률 및 고혈압 위험을 높이며,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경우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계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¹¹⁾
-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¹²⁾은 2017년 13조 8,884억원에서 2021년에는 14조 6,27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¹³⁾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단위: 억원, 비율(%))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138,884	143,253	145,413	145,791	146,274
명목 GDP	19,342,339	20,069,745	20,405,943	20,584,665	22,219,129
GDP 대비 비율	0.72%	0.71%	0.71%	0.71%	0.66%
건강보험 총 진료비	646,111	725,711	803,157	811,236	881,395
총 진료비 대비 비율	21.5%	19.7%	18.1%	18.0%	16.6%

- 더구나,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23년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8.7명으로 1일 평균 1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40~69세가 전체 사망의 약 50%이며, 20대 사망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음주로 인한 사망은 저출생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문제로 볼 수 있음.

<알코올 관련 사망률>

(단위 : 인구 10만 명당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망률	8.8	9.3	9.3	9.4	9.6	9.1	10.0	9.6	9.8	8.7

11)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음주”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5297

12) 비용항목 분류 : 직접비(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간접비(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 소득손실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손실액, 노동력 감소에 따른 생산성저하액)

13) 라규원, 강하림 등. (2024).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정책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21~50.

<알코올 관련 연령별 사망률>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명)

년도	사망자 수	전체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2013	4,476	8.9	0.2	2.6	12.4	21.6	19.5	17.1	11.7
2022	5,033	9.8	0.4	2.9	11.0	21.0	20.1	13.9	7.1
2023	4,462	8.7	0.5	2.7	9.4	18.2	17.4	11.9	8.0

□ 음주폐해방지 등과 관련하여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을 보면, 제8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음주의 유해성을 교육·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의2에서는 주류광고의 제한 및 금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의4에서는 금주구역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임.

<「국민건강증진법」상 음주폐해방지 관련 규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 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신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4.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 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조사·연구 등을 촉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 내용에 직접 명시하고 있는데,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과도한 음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법적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임.

□ 특히,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에서는 음주요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4조 6,274억원이고 흡연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11억 4,206억원으로 음주요인의 사회적 비용이 더 큼에도, 2025년 국민건강증진기금 1,732억 4,600만원 중 음주폐해예방관련사업은 975백만원으로 0.56%에 불과하여 예산이 현저히 적은데, 기금 사용 용도에 음주폐해예방 등 사업 내용 명시를 통해 음주폐해 관련 사업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단위: 억원)

건강위험요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음주	138,884	143,253	145,413	145,791	146,274
흡연	108,465	110,717	118,985	113,481	114,206

출처 : 라규원, 강하림 등. (2024).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정책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음주폐해예방사업 예산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2025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국민건강증진기금	186,841	100%	173,246 (△13,595)	100%
절주문화 조성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	1,298	0.69%	975(△323 인건비 건강증진개발원 이관 반영)	0.56%
국가금연지원서비스	99,970	53.5%	91,504	52.8%

-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음주폐해예방 관련 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구체화·명확화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임.

< 관계 단체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최근 주류업계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따라 음주에 대해 관대한 국민 문화가 지속되고 있고, 음주로 인한 2차 폐해(음주운전, 강력범죄) 등 사회 문제가 지속 발생됨. 이에 음주폐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교육의 확대·강화가 필요함.

3. 가향담배 판매 또는 수입 판매 금지 등(전진숙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제조사등(「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사 또는 수입판매업자)이 가향물질을 첨가¹⁴⁾하여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내용임(안 제9조의3, 제31조의2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9조의3(<u>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u>) <u>제조사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설></u>	제9조의3(<u>가향물질 첨가 및 표시 제한</u>) ① <u>제조사등은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은 제외한다.</u> ② <u>제조사등은 담배에 제1항 후단에 따른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가향물질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제31조의2(벌칙) ----- ----- -----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6. (생략)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u>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u> 4. (생략) ② ~ ⑤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u> 4. ~ 6.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u>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한하여 담배에 가향물질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에 따라 제조자들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시키는 행위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음.
- 가향담배는 담배 특유의 독하고 매캐한 향 대신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설탕 및 포도당, 당밀, 벌꿀 등 감미료나, 멘톨, 바닐린, 계피, 생강 등을 첨가하여 만든 담배제품으로서, 가향 물질을 담뱃잎, 담뱃잎을 둘러싸는 종이(꺾련지)에 도포하거나 니코틴 용액에 첨가하여 제조된 ‘직접 가향’ 담배 및 입에 무는 필터 내에 가향물질이 첨가된 캡슐을 삽입하여 이를 깨뜨려 사용자가 흡입하도록 제조된 ‘캡슐 사용’ 담배가 있음.
-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9조 및 제10조 이행을 위한 부분적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다양한 맛과 향 등으로 일반담배에 비하여 덜 자극적인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할 경우 오히려 흡연을 지속하는 확률 및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므로 담배에 가향을 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¹⁵⁾, 우리나라에서도 가향담배가 특히 청소년과 여성 등 젊은 층에서 흡연 시작을 용이하게 하고 담배 본연의 맛과 자극에 둔감하게 함으로써 건강에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경향이 있음이 지적됨¹⁶⁾.

15)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배시장과 함께 진화하는 가향담배와 규제 정책의 현주소」, 『금연이슈리포트』 제71호, 2019. 12. 31.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가향담배 관련 규제 사항 >

FCTC 제9조 및 제10조 이행을 위한 부분적 가이드라인		
3.1.2.2. 담배제품	맛을 향상시키는 성분을 사용하고, 담배연기의 자극을 향으로 감추는 것은 담배 사용을 지속·촉진하는데 기여한다.	(권고) 당사국은 담배 제품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성분을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한다.

□ 국내 담배시장 중 가향담배의 판매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담배 총 판매량은 우리나라의 2015년 33.3억갑에서 2023년 36억갑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가향담배는 2015년 6억갑에서 2023년 16.8억갑으로 증가하여 담배 총 판매량에서 가향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8.3%에서 2023년 46.7%로 급증하였음.

< 연도별 가향 담배 판매량 >

(단위: 억갑,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 판매량	33.3	36.6	35.2	34.7	34.5
가향담배 판매량	6	7.6	8.6	10.6	12.3
비중	18.3	20.7	24.4	30.8	35.6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6월
총 판매량	35.7	35.8	36.3	36.0	17.3
가향담배 판매량	13.8	14.8	16.2	16.8	8.3
비중	38.7	41.3	44.6	46.7	48.0

* 출처: 기획재정부

* 담배 수입·제조 4개사(KT&G, BAT, JTI, PM) 자료(면세담배 제외)

* 담배 제조·유통·판매 현황 등은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소관임.

□ 특히 2021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조사 결과¹⁷⁾ 우리나라 만 13세~39세 현재 흡연자 중 77.2%(남 75.9%, 여 78.4%)가 가향 담

16) 문심명, 「가향(加香)담배에 대한 해외 규제 사례 및 시사점」, 국회 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 196호, 2021. 4. 28.

17) 김희진(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가향담배 사용현황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21.9.~'22.7.)

배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연령별로 13세~18세 청소년에서 그 비중이 85%로 특히 높게 나타났음.

< 우리나라 흡연자 중 가향담배 사용 현황 >

	흡연자(5,243명)								
	가향담배 사용자 (4,045명, 77.2%)					비가향 사용자 (1,198명, 22.8%)			
	캡슐담배 (퀄런)	일반담배 (퀄런) ※ 캡슐 없는 연초 담배	퀄런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가향 사용자 (계)	일반담배 (퀄런)	퀄런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비가향 사용자 (계)
전체	1,346 (25.7)	1,069 (20.4)	802 (15.3)	828 (15.8)	4,045 (77.2)	856 (16.3)	215 (4.1)	127 (2.4)	1,198 (22.8)
만13-18세 (420명)	168 (40.0)	66 (15.7)	31 (7.4)	92 (21.9)	357 (85.0)	34 (8.1)	14 (3.3)	15 (3.6)	63 (15.0)
만19-24세 (1,661명)	525 (31.6)	314 (18.9)	204 (12.3)	288 (17.3)	1,331 (80.1)	209 (12.6)	59 (3.6)	62 (3.7)	330 (19.9)
만25-39세 (3,162명)	653 (20.6)	689 (21.8)	567 (17.9)	448 (14.2)	2,357 (74.5)	613 (19.4)	142 (4.5)	50 (1.6)	805 (25.5)
남	684 (25.4)	626 (23.2)	399 (14.8)	338 (12.5)	2,047 (75.9)	477 (17.7)	120 (4.5)	52 (1.9)	649 (24.1)
만13-18세 (272명)	106 (39.0)	48 (17.7)	21 (7.7)	49 (18.0)	224 (82.4)	23 (8.4)	12 (4.4)	13 (4.8)	48 (17.6)
만19-24세 (821명)	239 (29.1)	186 (22.7)	103 (12.5)	120 (14.6)	648 (78.9)	117 (14.3)	29 (3.5)	27 (3.3)	173 (21.1)
만25-39세 (1,603명)	339 (21.1)	392 (24.5)	275 (17.2)	169 (10.5)	1,175 (73.3)	337 (21.0)	79 (4.9)	12 (0.8)	428 (26.7)
여	662 (26.0)	443 (17.4)	403 (15.8)	490 (19.2)	1,998 (78.4)	379 (14.9)	95 (3.7)	75 (3.0)	549 (21.6)
만13-18세 (148명)	62 (41.9)	18 (12.2)	10 (6.8)	43 (29.1)	133 (89.9)	11 (7.3)	2 (1.4)	2 (1.4)	15 (10.1)
만19-24세 (840명)	286 (34.1)	128 (15.2)	101 (12.0)	168 (20.0)	683 (81.3)	92 (10.9)	30 (3.6)	35 (4.2)	157 (18.7)
만25-39세 (1,559명)	314 (20.1)	297 (19.1)	292 (18.7)	279 (17.9)	1,182 (75.8)	276 (17.7)	63 (4.0)	38 (2.5)	377 (24.2)

□ 아울러, 질병관리청이 2024년 발표한 ‘청소년 건강패널 조사’에서도 청소년의 담배제품 사용 시작 시 가향담배 사용 경험률은 69.5%(남학생 70.1%, 여학생 68.4%)의 높은 비중을 차지¹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가향담배 사용 규제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모든 담배제품군에 가향물질 첨가가 가능하고 가향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만 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 브라질 등에서는 가향물질을 규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¹⁹⁾.

-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담배제품 지침」(Tabacco Products Directive)이 201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쉐련 및 각련(말아 피는 담배)에 가향 첨가 및 가향을 위한 캡슐사용을 금지하면서, 멘톨은 2020년 5월부터 규제를 적용하고, 담배의 맛이나 향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터, 종이, 포장지에 가향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캡슐을 사용하여 가향하는 등의 각종 가향 기술을 금지함.
- 캐나다는 「캐나다 연방 담배법」(Tabacco and Vaping Products Acts, S/C)에 따라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담배제품의 소매 및 면세 판매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바, 멘톨 성분을 포함한 가향물질 첨가 금지는 2017년 10월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고, 노바스코티아(Nova Scotia)주(州)는 2020년 4월부터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지하고 있음.

18) 가향담배 사용경험이 높은 담배제품은 액상형 전자담배 84.8%, 쉐련형 전자담배 71.5%, 쉐련 62.9% 순이었음.

19) 문심명, 「가향(加香)담배에 대한 해외 규제 사례 및 시사점」, 국회 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 196호, 2021. 4. 28 및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가향담배! 흡연 시작은 쉽게, 금연은 더 어렵게」, 2022. 9. 27. 참조

- 미국은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에 따라 미국 내 판매되는 모든 쉐련(Cigarette)에 멘톨을 제외한 가향물질 함유가 금지²⁰⁾되고,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2018년부터 멘톨을 포함한 모든 가향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브라질은 2012년부터 세계 최초로 모든 담배제품에 멘톨을 포함한 모든 가향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원칙적으로 담배에 식품이나 가향물질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변화하는 담배 소비 행태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금연 유도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가향담배 제조 또는 수입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금연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해당 내용을 규정한 취지로 이해되나, 법 체계적으로 이를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지, 담배의 제조·판매 및 수입을 직접 규율하는 「담배사업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관하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가향물질 중 설탕·바닐린은 연소시 발암물질을 생성하고, 박하·코코아는 기관지를 확장시켜 니코틴 흡수를 용이하게 하며, 멘톨은 말단신경을 마비시켜 연기를 더 깊게 흡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가향물질은 그 자체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모든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를 예외 없이 제조·수입·판매

20) 2021년 8월 가향전자담배 5만 5천개 제품에 대한판매금지조치가 행하여졌으며, 미국 FDA는 2024년까지 멘톨 담배를 포함한 가향담배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2022년 결정하였음(2024년 판매 중단 이행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음).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향물질 첨가 규제는 담배 사용 시 진 입장벽을 높이고 금연 시도 및 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흡연을 하 락 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고,

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는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이 아닌 「담배사업법」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가향은 제조자들이 오 랜 기간 개발한 노하우가 담긴 제조물의 구성품 중 하나로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제조자의 영업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가향물질로 인한 유인성 및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아 직 입증된 바 없으며, 청소년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 및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아닌 구매자 연령 확인 등 자체 정화 노 력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4.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 관련 내용 추가(한지 아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및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 ③ (생 략)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u>내용과</u>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 ----- ----- ----- ----- ----- ----- <u>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u> -----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음주로 야기되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에서는 ① 과다한 음주의 건강 위험성 ② 임신 중 음주 시 태아의 건강 위험성에 관한 내용을 주류 판매용기에 경고문구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 및 관련 고시(참고자료 5)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알코올 1도 이상의 모든 주류 판매용기에는 다음의 3가지 경고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과음 경고문구 내용(보건복지부 고시)>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한편,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바, 음주운전 방지 대책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취소, 일정기간 면허발급 제한, 교통안전 의무교육 실시 및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참고자료 6),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해마다 약 1만 5,000건 발생하여 매해 150~300명 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음.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부상자 수 및 사망자 수 >

(단위: 건, 명)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9	15,708	295	25,961
2020	17,247	287	28,063
2021	14,894	206	23,653
2022	15,059	214	24,261
2023	13,042	159	20,628

*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상자수는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의 합계임)

- 개정안은 주류 판매용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문구를 추가로 표기함으로써 음주자의 경각심 제고를 통하여 음주운전을 사전에 자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 참고로, 미국은 주류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에 해롭다’, ‘음주는 자동차 운전이나 기계 조작 등 능력을 저하시키고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하고, 멕시코와 튀르키예는 ‘미성년자 음주 운전 금지’, ‘임산부 음주 금지’, ‘음주 운전 금지’ 등 세 가지 픽토그램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해외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참고자료 7).
- 한편, 현재 주류 용기에는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청소년 보호법」(여성가족부), 「주류면허법」(기획재정부, 국세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약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수의 법률에서 각각 표기 내용을 관할하고 있는바, 음주운전 경고문구가 추가될 경우 주류 판매 용기에 표기되는 내용이 많아

저 가독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문구 표기면적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참고자료 8).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하여 기존의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나, 법체계상 「국민건강증진법」보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추가될 경우 주류 용기 표기 정보가 많아져 가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표기면적 확대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0
02)6788-5506

【참고1】	청소년 흡연율
--------------	----------------

☐ 청소년(중1~고3) 흡연 관련 통계 현황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 현재 흡연율 >

산출지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현재 흡연율	전체	9.2	7.8	6.3	6.4	6.7	6.7	4.4	4.5	4.5	4.2
	중1	1.7	0.9	0.8	0.7	0.8	1.0	0.7	0.8	0.8	0.9
	중2	4.1	3.2	2.3	3.2	3.2	3.5	1.6	1.8	2.2	2.1
	중3	7.9	5.3	4.2	4.9	4.9	5.0	3.0	3.0	3.1	3.5
	중학교	4.7	3.3	2.5	3.0	3.0	3.2	1.7	1.9	2.1	2.2
	고1	11.3	9.1	7.1	7.0	7.7	8.3	4.8	5.4	5.1	4.3
	고2	13.5	11.9	9.4	9.7	9.4	10.0	7.2	7.3	7.1	7.3
	고3	15.7	14.0	12.0	10.9	12.0	11.4	9.2	8.8	9.2	7.9
	고등학교	13.5	11.7	9.5	9.2	9.8	9.9	7.1	7.2	7.1	6.4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사용한 사람의 비율

<처음 흡연 경험 연령>

산출지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평균연령	12.6	12.7	12.7	12.9	13.0	13.2	13.6	13.5	13.5	13.6

<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 >

산출지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현재 흡연율	전체	통계없음					7.3	4.8	5.2	5.4	5.1
	중1						1.1	0.8	1.0	1.1	1.3
	중2						4.0	1.8	2.2	2.7	3.0
	중3						5.6	3.4	3.7	4.0	4.4
	중학교						3.6	2.0	2.3	2.6	2.9
	고1						9.0	5.4	6.1	6.2	5.2
	고2						10.9	7.8	8.5	8.5	8.3
	고3						12.1	9.9	9.9	10.5	9.4
	고등학교						10.7	7.7	8.2	8.4	7.5

※일반담배(궐련)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현재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

【참고2】	간접흡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

□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질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청소년 영유아	성인
단기 건강장애	폐암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2형 당뇨병 우울증
상기도 감염 삼출성 중이염 영아사망 및 선천기형 유발 천식의 악화 기관지염 폐렴 성장발달장애	
장기 건강장애	
폐기능 감소 천식발생률증가 암발생 증가 우울증	

□ 청소년(중1~고3) 간접흡연 관련 통계 현황 (청소년건강 행태조사 통계)
 < 주1일 이상 학교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

산출지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현재 흡연을	전체	통계없음				20	21.6	7.2	7.9	통계없음	
	중1					11.8	16.0	5.2	4.9		
	중2					14.6	16.7	5.1	5.5		
	중3					16.2	17.5	5.0	6.8		
	중학교					14.3	16.7	5.1	5.7		
	고1					22.4	23.5	7.1	8.5		
	고2					24.5	25.9	8.7	9.5		
	고3					27.6	28.4	12.2	12.5		
	고등학교					25.0	26.0	9.3	10.2		

※ 최근 7일 동안 학교 실내(교실, 화장실, 복도 등)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주1일 이상 공공장소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

산출지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현재 흡연율	전체	통계없음				51.4	52.5	42.2	40.0	49.7	47.6
	중1					46.4	52.2	42.8	38.0	51.0	51.7
	중2					50.6	53.0	42.3	40.2	53.2	52.1
	중3					53.1	53.7	41.4	43.5	53.6	50.1
	중학교					50.2	53.0	42.2	40.5	52.6	51.3
	고1					52.3	52.3	43.0	40.5	48.7	46.7
	고2					52.5	53.3	43.1	39.9	47.0	44.5
	고3					52.6	50.9	40.4	38.1	44.3	39.8
	고등학교					52.5	52.1	42.2	39.5	46.7	43.9

※ 최근 7일 동안 집 또는 학교가 아닌 실내(상점, 식당, 쇼핑몰, 공연장, PC방, 노래방 등)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참고3】	음주의 사회적 피해
--------------	-------------------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단위: 억원, 비율(%))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138,884	143,253	145,413	145,791	146,274
명목 GDP	19,342,339	20,069,745	20,405,943	20,584,665	22,219,129
GDP 대비 비율	0.72%	0.71%	0.71%	0.71%	0.66%
건강보험 총 진료비	646,111	725,711	803,157	811,236	881,395
총 진료비 대비 비율	21.5%	19.7%	18.1%	18.0%	16.6%

출처: 논문(라규원 등, 2024) 및 통계청

<연간 음주폐해 경험률>

(단위 : % (표준화율))

시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서울특별시	5.6	3.2	5.1	7.2	7.7	5.2
부산광역시	3.8	1.9	5.9	6.2	6.9	5.6
대구광역시	5.3	3.5	3.3	2.6	4.8	3.2
인천광역시	5.9	5.6	5.7	6.9	8.5	5.1
광주광역시	4.5	1.6	4.4	3.1	4.7	3.9
대전광역시	2.5	2.1	6.1	2	6.2	1.8
울산광역시	4.5	1.5	3.5	2.7	4.9	2.7
세종특별자치시	8.3	2.1	3.4	5.5	9.5	7
경기도	4.9	2	6.1	3.3	6.4	3.7
강원도	5.1	1.8	4.9	2.6	5.7	2.8
충청북도	4.8	2.3	6.1	4.6	6.7	2.7
충청남도	4.7	1.8	6.3	4.2	9.1	4.3
전라북도	5.9	2.4	6.1	3.3	5.8	4.7
전라남도	3.9	1.9	4.5	4.6	8.4	3.5
경상북도	3.8	4.6	5.7	2.9	6.3	3.5
경상남도	6.7	4.4	12.6	4.9	6.1	3.6
제주특별자치도	3.7	1.7	6.1	3.2	4.9	5.3

※ 이외 기간은 조사결과 없음.

출처 : 지역사회 건강조사 (질병관리청)

【참고4】	현행 절주문화 조성 및 음주폐해예방 사업
--------------	-------------------------------

<음주폐해예방사업 24', 25' 예산 세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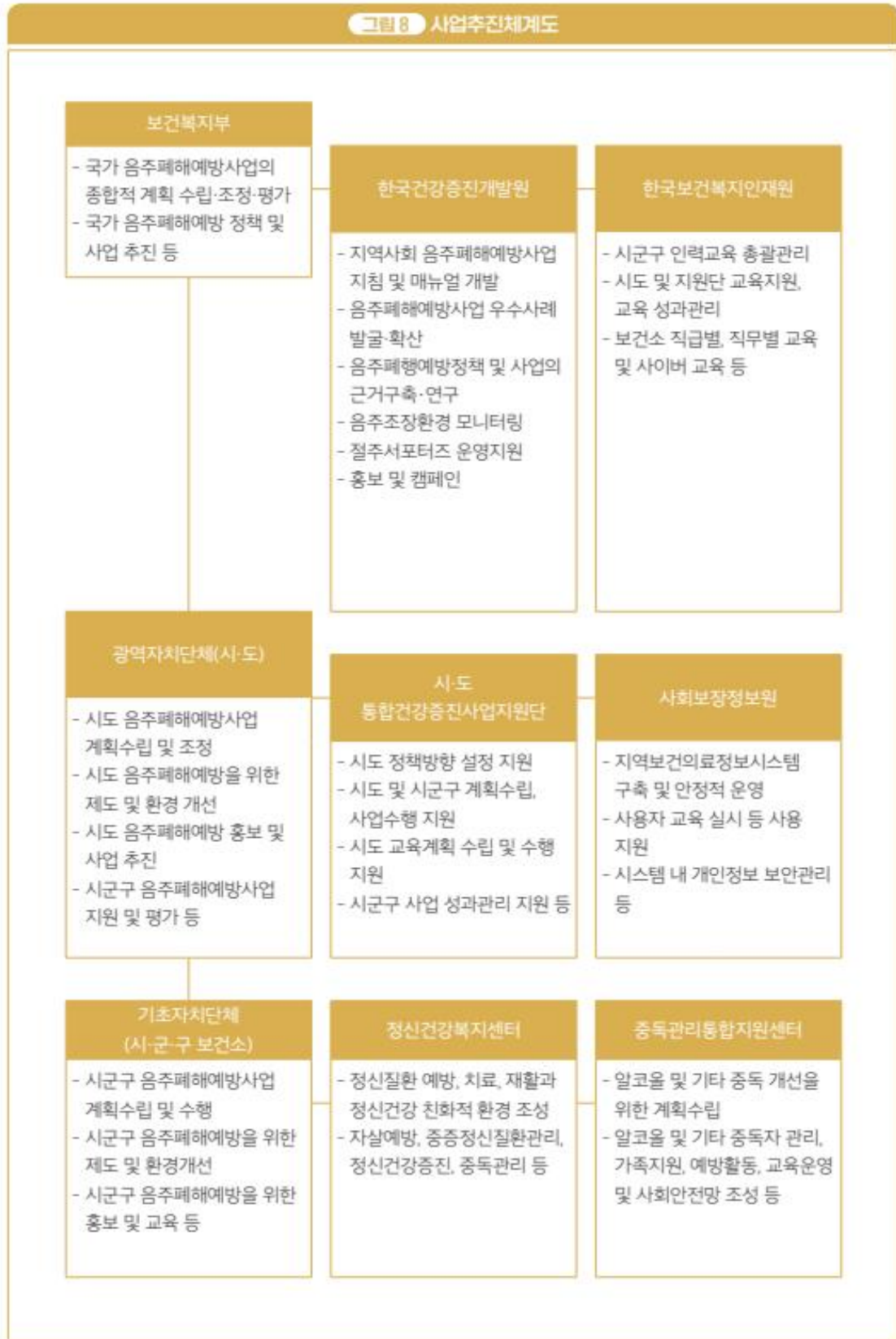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2024	2025	증감 및 비고
	예산안 (수정)	정부안 (조정)	
국민건강증진기금	186,841	173,246	△13,595
○ 건강증진 사업관리	55,970	50,750	△ 5,200
- 음주폐해예방관리	1,298	975	△ 323
· 음주폐해예방홍보	433	334	△99 (인건비 이관) · 음주폐해예방의 달 및 절주서포터즈 운영비 · 공익광고 제작·송출비
· 음주조장환경모니터링	417	241	△176 (인건비 이관) · 방송·인쇄·통신 광고 모니터링 · 대중교통시설 광고 모니터링 · 간판 등 옥외 광고 모니터링 · 주류판매점 광고 모니터링
- 음주폐해예방사업 운영 · 음주폐해예방 홍보	448	400	△48 · 홍보전략·메뉴얼 개발 · 언론정보 · 홍보자료 및 인쇄비 · 임차료, 국내여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18,559	19,497	
-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2,149	2,499	
·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활성화	88	88	
- 인건비	9,368	9,932	
· 경상 인건비	9,368	9,649	
·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	-	283	283 (인건비 편입)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99,970	91,504	△8,466

※ 2024년부터 민간보조금이 민간위탁비로 변경되었으며, 2023년과 동일하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음.

※ 2023년까지 진행하던 음주폐해예방교육(절주예방교육, 학교금주교육 등)이 폐지되었음.

<보건복지부 음주폐해예방사업 추진체계도>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음주폐해)

【참고5】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과음 경고문구 표기 규정
--------------	--------------------------------------

적용범위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중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
경고문구 내용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과음 경고문구 표시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표시방법	○ 표기방법 - 사각형 선 안에 표기 - “경고: ”라고 표기 - 경고문구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 글자크기 등 - 상표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의 크기로 표기 - 300ml 미만의 주류용기에는 7포인트 이상, 300ml 이상의 주류용기에는 9포인트 이상으로 표기 ○ 색상 - 경고문구 색상과 상표도안의 색상이 보색관계로 선명하게 표기 ○ 글자체 - 고딕체 ○ 표시위치 - 상표하단에 표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의2
표시방법 규정 및 변경	6개월 전에 해당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경과규정	○ 하단의 주류는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 가능 -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제조 또는 수입된 주류, -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주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재검토기한 규정	'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 의무	과음 경고문구 표시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6】	음주운전시 불이익 부과 내용 및 근거
-------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구 분	내 용	근거 법률
면허 취소시 일정기간 면허 재발급 제한	•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5년간 제한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간 제한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2년간 제한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	• 교통질서, 교통사고와 예방,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법규, 운전면허 및 자동차 관리 등(교육 내용) • 3~16시간 강의·시청각 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음주운전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음주운전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7】	주류용기 표시 제도 해외 사례
-------	------------------

국가	관련 법령	내용
튀르키예 ¹⁾	Law No. 6487 of 11/06/2013	터키 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주류에는 ‘알코올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라는 경고문구와 “18세 이하 미성년자 음주 금지”, “임산부 음주 금지”, “음주 운전 금지”를 나타내는 세 가지 픽토그램이 있어야 함 미성년자 음주 금지 음주 운전 금지 임산부 음주 금지 
멕시코 ²⁾	Mexican Official Standard NOM-142-SSA1 / SCFI-2014 Alcoholic beverages, Sanitary specifications, Sanitary and commercial labeling, 9.3.7.2	알코올 도수 6.1%의 주류에는 경고문구와 함께 3가지 종류의 그림이 개별로 또는 동시에 포함 미성년자 음주 금지 임산부 음주 금지 음주 운전 금지 
미국 ³⁾	Alcoholic Beverage Labeling Act (ABLA) of 1988	“임신 중 음주는 태아에 해롭다”, “음주는 자동차 운전이나 기계 조작 능력을 저하시키고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는 내용 표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⁴⁾	FOODSTUFFS7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 1972, REGULATIONS RELATING TO THE LABELLING OF ALCOHOLIC BEVERAGES	흰색 바탕색에 검은색 글자로, 아래의 경고 문구 중 하나를 표기해야 하며, 경고문구 면적은 주류용기 라벨 전체 크기의 8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음주는 운전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음주 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Alcohol reduces driving ability, Don't drink and drive.) - 술을 마시고 길을 걷지 마십시오. 음주는 사망을 초래합니다. (Don't drink and walk on the road, alcohol kills.) - 음주는 부상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Alcohol increases your risk to personal injuries.) - 음주는 폭력과 범죄의 주요 원인입니다. (Alcohol is a major cause of violence and crime.) - 알코올 남용은 건강에 위험합니다. (Alcohol abuse is dangerous to your health.) - 술은 중독물질입니다. (Alcohol is addictive.) - 임신 중 음주는 태아에게 해롭습니다. (Drinking during pregnancy can be harmful to your unborn baby.)

【참고8】	주류용기 표시 제도 현황 및 사례
--------------	---------------------------

연 번	주 관 기 관	법 적 근 거	주 요 내 용	규 제 사 항
1	보건 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4항, 제6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2 -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음주로 인한 위험성에 관한 내용 표기	표기내용, 표기면적, 글자크기, 글자색상, 글자체, 표기위치
2	여성 가족부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7항, 제9항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별표7	19세 미만 판매 금지에 관한 내용 표기	표기내용, 표기면적, 글자크기, 배경색상, 글자색상, 글자체, 표기위치
3	기획재정부, 국세청	- 주류면허법 제17조 -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18조 -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주류의 용도 구분 표기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 - 가정용 주류의 경우, “음식점·주점 판매불가” 표기	표기내용, 글자크기, 배경색상*, 글자색상* * 해당하는 경우
4	식품 의약품안 전처	-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5조2, 제6조제4항, 별표2, 별표3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품명, 식품유형, 알코올 함량,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내용량, 원재료명, 용기·포장 재질, 품목보고번호, 성분명 및 함량*, 보관방법*, 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열량*** 등 표기 * 탁주 및 약주는 소비기한, 맥주는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해당하는 경우 *** 주류제조자가 자율적으로 표기 **** 주종별 추가 표기사항 별도 규정	표기내용, 글자크기
5	농림축산 식품부	- 원산지표시법 제5조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 -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제3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고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표기내용, 글자크기, 글자색상, 표기위치
6	환경부	- 자원재활용법 제14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분리배출 표기 * 제품·포장재의 종류, 재질	표기내용, 표기면적,

연 번	주 관 기 관	법 적 근 거	주 요 내 용	규 제 사 항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1조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고시)	등 표기	도안색상, 표기위치
7	환경부	-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제6항 -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비용기보증금 환불 및 재사용 표기	표기내용, 표기크기, 표기위치, 표기색상, 글자체
8	공정거래 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제10조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 등) 표기	-